

# 이승은 장학금 운영 규정

제 정 : 2014. 7. 21.  
개 정 : 2025. 8. 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장학금은 이승은님의 금강대학교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 따라 금강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불교학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장학금은 “이승은 장학금(이하 장학금)” 이라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  
- 장학금의 지급

## 제2장 장학생선발위원회

**제4조(장학생선발위원회)** ① 제1조의 목적과 제3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그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부이사장, 총장, 법인사무처장 및 대학원장, 기획관리처장, 교학지원처장,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증자 1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③ 전항의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되며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
4.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사항
5. 본 장학금 운영지침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

**제6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단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의사로서도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 제3장 장학금신청자격 및 장학생선발

**제7조 (장학생의 자격제한)** 본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제한은 금강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장 제8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로 한다.

**제8조 (장학생선발)** ① 본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지급시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.  
② 필요한 경우 면접(인터넷 및 전화 면접 포함)을 행할 수 있다.

**제9조 (장학생 확정 및 공고)** 교학지원처장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의 선발 추천을 받아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금강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4장 제12조(장학생공고) 및 제13조(장학증 발급)에 준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25. 8. 1>

## 제4장 장학금 재원 및 지급

**제10조 (장학금 재원 및 지급)** ① 본 장학금의 재원은 기탁원금의 이자수익만으로 하며 그 지급 금액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기탁원금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에서 관리한다.  
② 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 학기말 1회 지급한다.  
③ 금강대학교 내·외부장학금과의 중복수혜는 인정한다.  
④ 학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과 지급 내역을 기탁자에게 통보한다.

## 제5장 기타사항

**제11조 (장학관리)** 본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하며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에서 지원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**제12조 (기타사항)**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금강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### 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